

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I 사업 개요

□ 목 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농작물재해보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지원 556,613백만원

□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

- 보조사업자(사업관리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 간접보조사업자(사업시행기관): 보조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이하 보험사업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사무관 서경호	044-201-283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작물보험지원부	부 장 이승윤	02-3771-6831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지원팀	팀 장 안성용	02-3786-7631

II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 가입 진행 (등록 여부는 농업경영체 서버와의 연계를 통해 전산적으로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별표 1 참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보험가입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별표 2)

3. 지원대상

- 농작물재해보험 순보험료(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

- 아래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33~65% 차등 보조, 그 외는 50% 보조

품 목	보장수준 (%)				
	60	70	80	85	90
배, 단감, 사과, 뽕은감, 버	65	60	50	38	33
콩, 봄·고랭지·가을감자, 고구마, 보리, 옥수수,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가을배추, 가을무, 복숭아, 감귤(만감류)	60	55	50	43	40
대파, 봄·고랭지·월동무, 봄·고랭지·월동배추, 가을·월동당근, 양상추, 쪽파(싹파), 메밀, 시금치, 차, 귀리, 밀, 매실, 자두, 오미자, 살구, 복분자, 오디, 무화과, 블루베리, 두릅, 유자	60	55	50	48	47

- * 향후 모든 품목 대상 보장수준에 따른 보험료 보조율을 33~65% 수준으로 연차별로 조정 예정(단, 보장수준이 세분화되지 않은 시설작물, 버섯류, 고추, 브로콜리는 예외)

- 가입자별 순보험료 국고지원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상품별로 적용)

- * 국고 보조율에 따른 지원금액이 5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가입자가 부담

- 당해 연도에 가입하여 2회 이상 경작불능보험금을 수령*한 농지**가 동일 품목(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국비 지원 불가

* 2회차 경작불능 사고 접수 후 경작불능조사서 등을 통해 경작불능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농지 포함

** 농지번호(목적물고유번호)가 달라도 위치가 같은 경우 동일 농지로 간주

- 지방자치단체에서 순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단, 국비 지원이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불가

○ 농작물재해보험 부가보험료*: 100% 보조

* 부가보험료는 위탁판매비용 등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

4. 보험 가입 기준·절차

○ 보험 대상 농작물(목적물): 총 78개 품목(94개 상품)

구분	품목
과수(13)	사과·배·단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포도·복숭아·무화과·유자·살구·블루베리
식량(11)	벼·밀·감자·고구마·콩·옥수수·팥·메밀·보리·귀리·녹두
채소(15)	양파·마늘·양배추·배추·무·파·단호박·시금치·당근·고추·브로콜리·양상추·수박·생강·오이
특작(4)	오디·차·인삼·참깨
임산물(8)	뽕은감·밤·대추·복분자·오미자·호두·표고버섯·두릅
버섯작물(3)	느타리버섯·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시설작물(24)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쪽삭·감자·깻잎

- 동일 보험 목적물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 가능

- 가을배추(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 상품)는 사업 대상 지역에서 수요조사 시 가입 수요를 제출한 농가 대상으로 운영

○ 보장 대상 피해의 범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별표 3)

* 벼, 복숭아, 감자, 고추, 가을배추, 사과 품목 해당

○ 보장수준: 보험가입금액의 60~90%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별표 3)

- 보험가입자의 과거 손해율이나 가입연수 또는 품목별 시군의 생산비 대비 보험료 수준 등에 따라 보장수준 80·85·90% 상품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가입자의 최근 5개년 누적 손해율이 500% 이상인 경우, 보장수준 80%형 이상을 선택할 수 없음('26. 7월 이후 판매 시작 품목부터 적용)

○ 보험 대상 품목(상품)별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별표 4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가입기간 중이라도 가입을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가입 중단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가입 중단 시 대상 품목, 중단기간·사유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금원에 지체없이 알려야 함

○ 보험 가입 단위: 농지, 과수원, 단지(농업용시설·버섯재배사)

- 보험 가입단위는 필지와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말함

- 다만, 아래의 경우 보험 가입단위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음

품목	보험 가입단위
벼	농지수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자 1인당 1증권으로 가입 * 단, 보험료율이 다른 지역(시·군 또는 읍·면·리)에 위치한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나, 동일 가입자가 일부 농지에 대해 지역농축협을 달리하여 가입하는 경우 등은 다수 증권으로 가입 가능
시설작물 버섯작물	반드시 농업용시설이나 버섯재배사와 함께 가입 * 단,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시설작물의 경우 단독 가입 가능

○ 보험료율 적용

- 각 상품에서 주계약·특약별로 각각 요율을 적용하며, 요율은 상품 등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등 단위로 산출

* 사과, 배, 단감, 뽕은감은 일정 수준의 통계 신뢰도를 확보한 일부 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요율 산출

* 농업용시설·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비가림시설(참다래·포도·대추)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요율 산출

- 시·군·구별 보험료율을 과거 손해율 및 사고실적('26. 11월 이후 판매 시작 품목부터 적용)에 따라 개인화(할인·할증)하여 적용
- 품목별로 방제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른 할인율을 추가 적용 가능
- *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및 방제시설 설치 여부 등은 품목별 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하며, 상세 정보는 지역농축협에서 확인 가능

○ 기타

- 농지·과수원의 일부 면적 또는 산물의 일부가 관광,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 가입 제한(단, 농업용시설, 버섯재배사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은 가입 가능)
- * 예: 농지·과수원 면적의 20% 이상이 관광, 체험 등에 활용되는 경우
- 농지·과수원의 경계 또는 재식(栽植) 주수(株數)가 불명확한 경우, 별도의 가입 또는 보상기준 설정 가능
- 품목(상품)별 재배 특성 및 표준수확량 적용, 수확량 조사 등 상품운영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입제한 또는 인수기준 설정 가능
- * 예: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 품종·재배방법·재배시설 등에 대한 가입 제한기준 설정, 고랭지작형에 대한 해발고도 인수기준 설정 등
- 간척지의 재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수확량 차등, 보장수준 등 별도 적용

○ 가입절차: 별표 6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산림조합 등(이하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절차 진행
- * 보험사업자는 농가 부담 보험료를 수납 후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교부

5. 보험금 지급

-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 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적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6. 기타

- 품목별 보험료 지원 기준, 보장수준 선택 기준 등과 관련하여 증빙자료에 오류, 누락 등 발생 시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의성 확인 시 다음 연도 보험 가입 또는 보험료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등을 따름
- * 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 특별법임을 고려하여 보험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을 우선 적용(농금원과 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금의 지급,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의 성립·유지, 보험료의 납입, 계약의 해지 및 환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을 따름
-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가입 조건, 손해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 방법에 따름
- * 구체적인 상품별 가입·보상기준 등은 보험사업자가 농금원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 후 업무 방법에 반영
- 보험사업자는 사업지역, 가입기간·단위 등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금원과 사전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보험가입자, 보험사업자 및 지역농축협은 보험 상품 개발·개선·관리를 위해 농금원에서 시행하는 수확량 생산비 실측, 설문 등 각종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Ⅲ 사업 시행

1. 사업계획 수립단계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 촉진계획, 사업비* 사용계획서,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교육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금원에 제출
- *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손해조사비 및 부가보험료 모두를 의미함
- 사업비 사용계획서에는 위험보험료, 예정손해조사비 및 예정사업비 산출 근거, 사업비 배분 기준, 손해평가 수당 산정 및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등 포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 근거 및 수당·수수료 기준의 적정성 등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정정 요청
- 보험사업자, 지역 농축협,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사업점검, 보험상품·제도 연구·개선, 손해평가사 교육, 지자체, 농업인 등 대상 보험 교육·안내·홍보 등을 포함하는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사업 약정 체결
- 보험사업자의 세부시행계획 및 자체 수립한 사업관리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농금원 및 보험사업자에 사업시행지침 전달

2. 보험 상품 개발 단계

보험사업자

- 품목(품종·작형 등) 신규 도입 및 상품 세분화 등에 따른 상품개발 추진
- 농금원의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체계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품목별 상품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개선 방향(안)을 마련하여 연 2회 이상 농금원에 제출
- 농금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개선안에 따라 보험상품을 구체화하며, 「보험업법」 제12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 및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라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보험상품별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업무매뉴얼 등)를 농금원에 제출
-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금의 지급, 보험료의 납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금원과 협의하여 「농업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반영 가능
- * 예: 다수 품종을 재배하는 과수원에서의 평년수확량·기준가격 적용 기준 등
- 예정사업비율, 예정손해조사비율, 사업비 배분 기준, 손해평가 수당 산정 및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등 국고 지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농금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품목(품종·작형 등) 신규 도입 및 상품 세분화 등 상품개발 전반을 관리 감독
- 상품 판매 일정을 고려하여 상품 기초서류 준비, 표준수확량 연구, 가격 기준 정립 등 개발 과정 전반을 관리
-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상품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난이도·시급성 등에 단기 및 중장기 개선과제 분류

- 농업작물재해보험 상품개선 체계 구축 및 운영
 - 상품개선 체계에 따라 관계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연구기관 등) 검토·협의, 전문가 자문·연구 등을 통해 상품개선안 확정 후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보험 기초서류 확인 및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단체, 국회,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요구·건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기존의 상품개선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개선과제 도출·제시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을 통해 상품개선안 검토·확정

3.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단계

보험사업자

- 자금집행계획을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보험 가입현황서 등을 첨부하여 농금원에 보조금 교부 신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자금집행계획, 보험 가입현황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농식품부의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배정에 따라 보험사업자에게 보조금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금원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배정

4. 사업시행 단계

보험사업자 등

- 보험사업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계약·인수, 사고 접수,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사업 현황·실적 점검·보고, 교육·홍보 등 사업 추진
- 보험사업자는 사업비 사용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금원과 사전협의 후 변경 적용
 - * 사업비 총액 및 비목별 사업비, 위험보험료, 예정손해조사비 및 예정사업비 산출 근거, 사업비 배분 기준, 손해평가 수당 산정 및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등
- 지역농축협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위탁계약에 따라 농가로부터 보험 가입 신청, 사고·보험금 신청 등 접수

<계약·인수>

- 보험사업자는 품목별 가입 기간에 보험상품 판매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은 계약에 따라 농가로부터 보험 가입신청, 사고·보험금 신청 등 접수
 - 품목별 보험료 지원 기준, 보장수준 선택 기준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가입 절차를 진행
- 보험 가입 희망자가 가입 기간 내에 보험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 가입기간 내에 계약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 희망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한해 가입기간 종료 후 7영업일 이내에 계약 완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손해평가>

- 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 보험사업자는 본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험사업자 또는 농금원으로부터 손해평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손해평가(업무보조 포함)를 맡길 수 없음
-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 가입자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보험 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에 따라 재평가 실시
-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농금원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통지한 경우,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의견서 처리결과를 농금원에 통지

<현황·실적 보고>

- 매월 7영업일까지 전월 기준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실적 등을 농금원에 제출
 - 농금원 요구 시 가입·지급실적, 사고접수·처리 현황 등 통계자료 수시 제출
- 보장 대상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손해평가 가용인력 등을 파악하여 손해평가계획 수립
- 보장 대상 재해 발생 시 손해평가계획에 따라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농식품부 및 농금원에 사고 접수현황, 손해평가 진행 현황, 피해 규모, 추정 보험금 추산 등을 신속 보고

<교육·홍보>

- 농금원과 함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실적, 제도·상품개선 사항, 품목별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험 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
- 지역 농축협 등의 판매직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상품교육·홍보 실시
 - 지역총국 담당자 등 대상 광역단위 설명회 개최(지역총국 → 지역 농축협 → 농업인으로 설명 전파)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손해사정사: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 손해사정사 보조인: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 손해평가인: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및 실무교육
- 실무교육(정기교육):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 보험 종류별 약관, 손해평가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CS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그밖에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교육 등
- 보수교육: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정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농업정책보험금용원

- 농금원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험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가격 산출·공시, 사업 현황·실적 점검·보고, 손해평가 및 재평가 현황·보고,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현황·보고, 교육·홍보 등 추진
-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상조건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 기상 관측소 기준으로 판단

<가격 산출·공시>

- 대상 품목(상품)별로 품종, 지역, 주출하기,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 가격을 산출하고, 판매를 시작하기 전까지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 단, '27년까지 가격 산출 대상 품목 순차 확대 예정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에 따라 실시한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농금원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의신청을 공정하게 처리
- * 이의신청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험사업자에게 통지 → 보험사업자의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

<현황·실적 보고>

- 보험사업자가 보고한 가입, 보험금 지급, 손해평가 및 재평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현황·실적자료를 농식품부에 보고
 -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수정,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품목별·시기별 가입 동향을 분석하여 가입률 추정·보고

<교육·홍보>

- 보험사업자와 함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실적, 제도·상품개선 사항, 품목별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험 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
- 지자체, 농업인, 보험사업자, 지역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보험 정책·제도 추진방향, 제도·상품 개선사항 등 교육·안내·홍보 추진
 - 해당 품목의 주산지 대상 설명회 추진(온라인 실시 또는 안내자료 발송)
-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다음 교육 실시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 실무교육(정기교육):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 보험 종류별 약관, 손해평가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CS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그밖에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교육 등
 - 보수교육: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정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 정책방향 설명 및 보험 홍보 지원
 - * 필요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 가능

5. 정산 단계

보험사업자

-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농금원에 제출(다음 해 2월 28일까지)
 - * 가입 실적과 순보험료·부가보험료 집행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보고서 작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농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금원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의 실적을 심사한 후 보조금 확정 통지
- 농금원 점검 및 실적보고서 검토, 검증조사 등을 통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규정, 지침 등을 위반하여 집행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사업비 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한 순보험료·부가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 시 제외
 - * 사업비 총액 및 비목별 사업비, 위험보험료, 예정손해조사비 및 예정사업비 산출 근거, 사업비 배분 기준, 손해평가 수당 산정 및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등

1. 이행관리·점검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지원예산 집행현황·결과 등을 철저히 관리
 - 농식품부 또는 농금원의 요청 시 관련 법령·규정, 사업시행지침, 약정서, 보험사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자체 점검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지역 농축협이 관련 법령·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위탁계약 내용, 보험사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농금원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정기(분기별 또는 반기별)·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 손해평가인력*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는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점검결과 보고(별표 8)’를 농금원에 제출
 - *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보조인 포함(이하 동일)
 - 손해사정법인 및 손해평가인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 후 결과 보고, 손해평가사에 대해서는 부당·부실 손해평가 확인 내역과 제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농금원이 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 내용 통보한 경우, 보험사업자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손해사정법인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제재를 검토·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금원에 제출
- 농금원이 보험사업자, 지역 농축협 및 보험 가입자의 부당·위법 사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금원에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및 보조금 집행실태, 관련 법령·규정, 사업시행지침, 약정서, 보험사 내부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거나 보험사업자에게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손해조사비 및 부가보험료의 경우, 집행 내역 등을 정기(반기)·수시로 점검하고, 사업비 점검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보험사업자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농축협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관련 법령·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위탁계약 내용, 내부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거나, 보험사업자에게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점검대상: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보험가입자, 손해평가자 등
 - 점검내용: 관련 법령·규정, 사업시행지침 등* 준수 현황,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등 사업 추진실적, 순·부가보험료 지원예산 집행현황,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
 -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시행지침, 위탁계약 내용, 보험사 내부규정 등
- 농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보험사업자 및 지역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인수·지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검증조사를 실시하거나, 보험사업자에게 검증조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농식품부·보험사업자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손해평가인력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조사를 실시하거나, 보험사업자에게 검증조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 보험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점검 및 검증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금원이 보고한 점검·검증 결과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며, 보험사업자 및 농금원의 사업 운영실태 등을 총괄 관리·감독
- 농금원 또는 보험사업자의 사업 수행 상황 및 집행 현황, 관련 법령·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음

2. 제재 조치 및 인센티브 부과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지역 농축협, 보험가입자 및 손해평가인력의 관련 법령·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위탁계약 내용, 보험사 내부규정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시정 및 관련 법령·규정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농금원에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등에 따라 지역 농축협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 지체없이 농금원과 농식품부에 보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보험가입자가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 사기행위로 처벌을 받았거나, 손해조사자를 위협하거나 폭력·폭언을 행사하는 등 계약·인수 및 손해평가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처벌이나 업무방해의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농금원이 지역 농축협, 보험가입자 및 손해평가인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농금원에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점검 및 검증조사 결과, 보험사업자, 지역 농축협, 보험가입자 및 손해평가인력의 관련 법령·규정, 사업시행지침, 약정서, 위탁계약 내용, 보험사 내부 규정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시정 및 관련 법령·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보험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지체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지역 농축협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포상·시상 등 인센티브 지급 제한, 위탁판매비용 차등 지급(기본 비용 대비 최대 10% 이내 감액) 등을 조치하도록 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보험가입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 계약 변경, 인수 제한 등을 조치하도록 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손해평가인력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제재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며, 손해평가 수당 삭감 등을 조치하도록 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점검 및 검증조사 결과, 지역 농축협 및 손해평가인력의 사업실적 등이 우수함을 확인하는 경우,
 - 해당 지역 농축협에 대해서는 포상·시상 등 인센티브 지급, 위탁판매비용 차등 지급(기본 비용 대비 최대 10% 이내 증액) 등
 - 손해평가인력에 대해서는 손해평가 수당 증액(기본 대비 최대 10% 이내) 등을 조치하도록 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 농금원 및 보험사업자, 지역 농축협, 보험가입자, 및 손해평가인력을 대상으로 부당·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법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반환 명령 등 관련 법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른 조치를 이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농금원, 보험사업자, 지역 농축협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V 평가 및 환류

보험사업자

- 전년도 성과지표 측정 결과 등에 따라 금년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매년 3월)
- 매 연도 말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 결과서를 농금원에 제출(익년 1월 31일까지)
- 연도 말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홍보 실적, 가입 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농금원에 제출
- 농금원의 위탁을 받아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성과지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농식품부에 보고
- 매년 3월 보험사업자 대상으로 보험 사업계획 상에 설정된 사업지역, 대상 품목 및 품종, 보험가입면적, 보조금 집행 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달성 여부 등 성과평가 결과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 등록정보: 5개 부분 총 56개 항목(농업법인 64개)

- 농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의 농업인)·농업법인 일반현황, 농지·축산정보 등
 -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 등의 정보는 제외

□ 등록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및 전산등록 → 등록확인서 발급

- 처리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등록절차	등록 방법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
신청서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제출
접수 및 전산등록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농업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제출서류 확인 및 필요 시 신청사항에 관한 현지조사 등 병행
등록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직불금·경영체 통합 신청 시 90일 이내에 발급

※ 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가입자격

품목명	가입 자격
① 사과, 배, 단감, 뽕은감, 참다래, 자두, 밤, 양파,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분자, 오디, 오미자, 감귤, 무화과, 유자, 살구, 호두, 수박, 두릅, 블루베리, 녹두, 생강, 참깨, 파, 호박, 당근, 메밀, 벼, 오이	농지의 면적이 300m ² 이상
②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의 면적이 300m ² 이상
③ 콩	농지의 면적이 500m ² 이상
④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양상추, 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700m ² 이상
⑤ 귀리, 밀, 보리, 차, 쌀,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m ² 이상

※ 가입자격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지역농축협을 통해 홍보

※ 논·밭작물에 한하여 물리적으로 인접한 3개 농지의 합산 재배면적이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

※ 벼의 경우 '26년 한시적으로 300m²를 적용, '27년부터 500m² 적용

보장 대상 피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보장 방식	품목	대상 피해	자기부담비율(%) 또는 자기부담금
적과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사과, 배, 단감, 뽕은감 (특약)나무보장	(적과전)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태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한정보장 (적과후)태풍(강풍)·우박·화재·지진· 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가을동상해·일소피해·부보장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무화과 (특약) 나무보장	(7.31일 이전)자연재해·조수해·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복분자	(5.31일 이전)자연재해·조수해·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10, 15, 20, 30, 40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감귤(온주밀감류) (특약)나무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12.20일 이전) (특약)동상해(12.21일 이후)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오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두릅, 블루베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참다래, 매실, 자두, 살구 (특약)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포도, 감귤(만감류) (특약)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복숭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유자 (특약)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나무특약) 5
	벼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 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 벼알마름병)	10, 15, 20, 30, 40
	가을배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무름병)	20, 30, 40
	밀, 고구마, 옥수수, 콩(논/밭), 차, 밤, 대추, 오미자, 양파, 보리, 팥, 가을·월동양배추, 단호박, 가을·월동당근, 월동무, 월동배추, 대파(신안, 영광, 진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감자(고랭지/봄/가을)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10, 15, 20, 30, 40
	마늘 (특약) 조기보장특약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호두, 귀리, 수박, 가을무(일반무), 참깨, 고랭지당근, 생강, 녹두, 봄무, 봄배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사과, 배, 단감, 뽕은감 (특약)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사과 탄저병)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보장 방식	품목	대상 피해	자기부담비율(%) 또는 자기부담금
특정위험 수확감소보장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 화재·우박·폭염·냉해·조수해	10, 15, 20, 30, 40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시금치,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 메밀, 대파(신안, 영광, 진도 외 전국)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쪽파·질파, 양상추, 오이, 가을무(단무지무·알타리무)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브로콜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잔존 보험가입금액의 3%, 5%
	고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참외, 토마토, 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캐비닛·마리쥬·감자·꽃) 시설버섯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소손해면 책금 10만 원
시설종합 위험보장	농업용시설물 (특약)제조달가액, 버섯재배사, 무대시설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해부보 장	손해액의 10% (단 최소 30 최대 10만 원) (단 피복재 단독 사고 시 최소 10, 최대 30만 원) (화재특약) 없음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손해액의 10% (단 최소 30 최대 10만 원) (단 피복재 단독 사고 시 최소 10, 최대 30만 원) (화재특약) 없음
	헤가림시설 (인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손해액의 10% (단 최소 10 최대 10만 원)

※ 보험가입금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위 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약관에 따름

※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는 연속된 30일 중 누적 일조시수(측정일부터 측정일 직전 2일 전까지 3일간 구간평균) 4시간 이하인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재해로 판단

※ 가을배추의 자연재해성 무름병 피해는 9월 이후 사업지역 관할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일일 강우량 10mm 이상 3일 이상 연속’의 기상조건을 충족하거나, 기상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업지역 내 가입농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로 판단(단, 방제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보상 제한)

※ 사과와 자연재해성 탄저병 피해는 7월 이후 사업지역 관할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5일 연속 강우 및 5일 누적강수량 150mm 이상’의 기상조건을 충족한 경우 재해로 판단(단, 방제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보상 제한)

보험 상품별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구 분	사업지역	가입기간
사과·배·단감·뽕은감 (적과전중합위험방식)	전국	2~3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전국	2~11월
시설작물(감자)	전북(김제, 부안)	2~11월
시설작물(깻잎)	경남(밀양), 경북(경산), 충남(금산, 논산)	2~11월
버섯재배사 및 시설버섯 (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	전국	2~11월
봄배추	강원(평창, 영월), 경북(영양), 전남(해남)	3~4월
봄무	강원(평창), 전북(고창)	3~4월
단호박	전국	3~5월
밤·대추·호두·감귤(만감류·온주밀감류)	전국	4~5월
고추	전국	(강원 외) 4~5월 (강원) 5~6월
봄감자	전국	4~5월
수박	경북(안동, 영주, 예천, 봉화), 전북(고창, 진안)	4~5월
오이	강원(홍천, 화천), 충북(제천)	5월
고구마·옥수수(사료용 포함) ·벼(조사료용 포함)	전국	4~6월
대과 (중합위험생산비보장방식)	전국(전남(신안, 영광, 진도) 제외)	4~6월
대과 (중합위험수확감소보장방식)	전남(신안, 영광, 진도)	4~6월
벼(가루쌀)	전국	4~7월
고랭지감자	전국(강원, 경북)	5~6월
참깨	경북(예천, 문경)	5~6월
고랭지당근	전국(강원)	5~6월
고랭지배추·고랭지무	전국(강원, 경북, 전북)	5~7월
인삼	전국	5~10월
참다래·콩	전국	6~7월
생강	충남(서산, 태안), 경북(안동, 영주, 예천, 봉화)	6~7월
녹두	전남(무안, 신안)	6~8월
팥	전국	6~7월
양상추	강원(횡성, 평창)	7~8월
가을·월동당근	전국	7~9월

구 분	사업지역	가입기간
가을배추	전국	8~9월
매밀	전남, 제주	8~9월
가을·월동양배추	전국	8~9월
가을무(일반무, 단무지무·알타리무)	전국	8~9월
가을감자·브로콜리	전국	8~10월
월동무	전국(제주)	8~10월
월동배추	전국(전남·해남·무안·진도)	8~10월
쪽파·실파(1형)	전국(경북·예천, 충남·아산·예산·서천·서산·보령·당진, 전남·보성·무안·장흥, 부산·기장, 제주·제주)	8~10월
쪽파·실파(2형)	전국(충남·아산)	8~10월
시금치	전국	9~11월
차	전국(경남, 전남)	9~10월
마늘	전국	(특약)8~10월 (난지형)10~11월 (한지형)10~11월
양파	전국	10~11월
귀리	전남(강진, 해남)	11~12월
밀·보리	전국	11~12월
매실·자두·포도·복숭아·살구	전국	11월
오미자	전국	11~12월
복분자	전국(전북·고창·무주·순창·정읍·진안, 전남·담양·장성·함평)	11~12월
오디	전국(전북, 전남, 경북·상주·안동, 경남·밀양·진주)	11~12월
무화과	전남(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11월
블루베리	전북(순창), 전남(담양), 충북(영동), 경기(평택), 경북(상주, 의성)	11~12월
두릅	전북(순창), 경남(하동), 전남(광양, 순천)	11~12월
유자	전남(고흥, 완도, 진도), 경남(거제, 남해, 통영)	11~12월

- ※ 구체적인 일 단위 가입일정은 ①농금원이 보험 판매 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 홈페이지 및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해 구체적인 보험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음
- ※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금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지역농축협을 통해 홍보
-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가입기간 중 가입이 일시 중지될 수 있음
- ※ 사과 다축재배 사업지역은 경남(거창), 경북(영주, 청송, 포항, 봉화, 의성, 안동, 예천), 충남(예산), 가을배추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사업지역은 경북(영양), 전남(해남), 충북(괴산)으로 한정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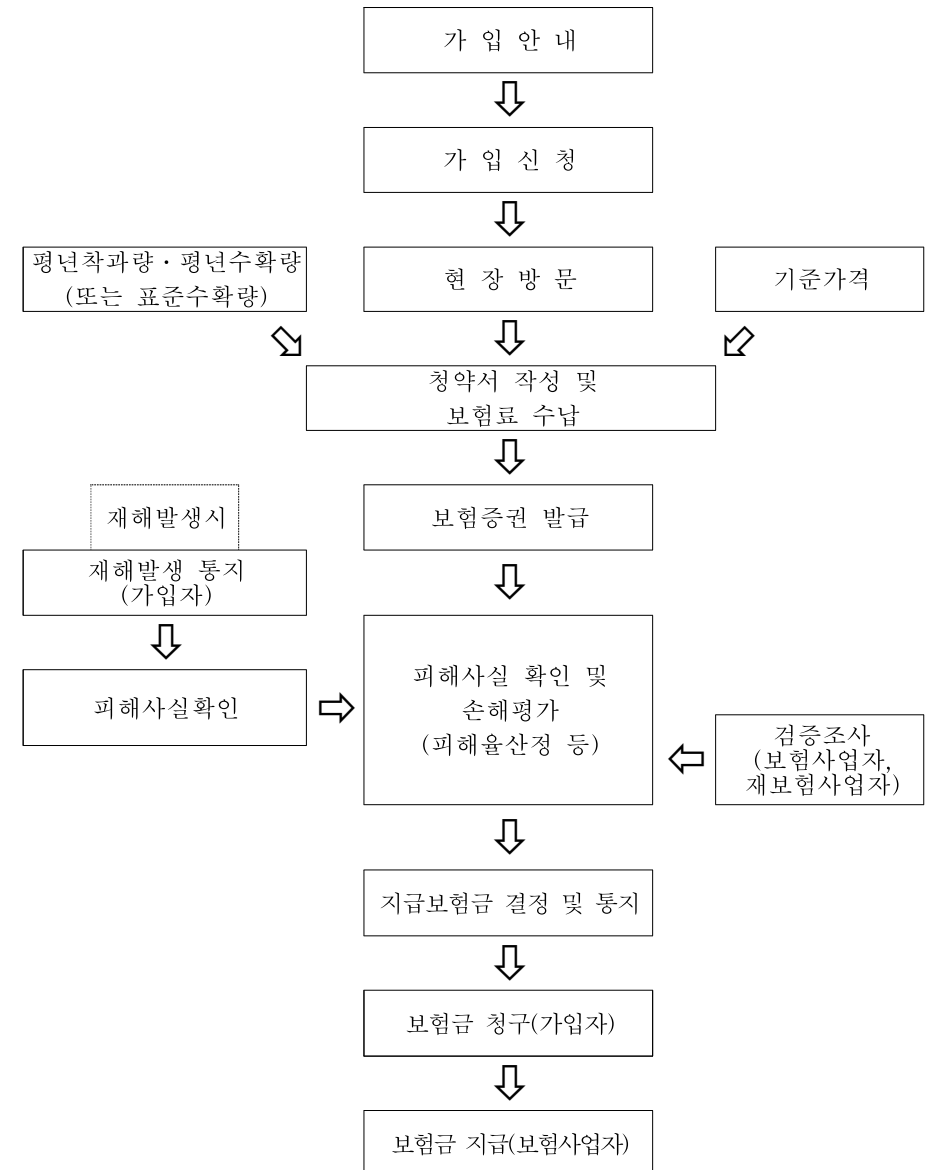
사업유형	대상품목
본사업 1형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참외, 토마토, 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쪽갓), 시설버섯(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감자(봄/가을), 무(가을), 배추(가을), 감귤(만감류/온주밀감류), 고구마, 고추, 단감, 당근(가을·월동), 대추, 대파, 뽕은감, 마늘, 매실, 밀, 밤, 배, 벼, 보리, 복숭아, 브로콜리, 사과, 사료용옥수수, 살구, 시금치, 양배추, 양파, 오미자, 옥수수, 인삼, 자두, 조사료용벼, 참다래, 콩, 팥, 포도, 호두, 단호박
본사업 2형	감자(고랭지),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동), 당근(고랭지), 차, 복분자, 오디, 쪽파(실파)
시범사업	유자, 무화과, 메밀, 귀리, 양상추, 시설작물(감자, 꺾임), 두릅, 블루베리, 수박, 녹두, 생강, 참깨, 배추(봄), 오이, 무(봄)

※ 본사업 1형: 전국 대상으로 운영하는 품목

※ 본사업 2형: 품목·작형 등 특성으로 재배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통계청 통계가 존재하거나, 보험화 최소 요건 충족 지역으로 한정 운영하는 품목

※ 시범사업: 본사업 판매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 판매되는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보상절차



보험 기준가격 산출 기준

I. 공통기준

- (1) 올림픽 평균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산출한 평균값을 의미
- (2) 기초통계 기간은 품목(품종·작형)별 주출하기를 의미하며, 기준가격 산출 시 해당 기간의 가격만을 반영
 - * 유통 변화 등으로 인해 기초통계 기간 내 거래실적이 미미한 경우 일시적으로 기초통계 기간 조정 가능
- (3) 기준가격 산출 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상·하차비, 상장수수료 등 유통비용은 차감
 - 유통비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자료, 농림사업 공동선별비지원사업 단가 등을 활용하여 산정
 - * 대상 품목에 대한 유통비용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의 자료를 준용
 - * 품목별 유통비용(예시): 고정비용(공동선별비, 포장재비, 운송비, 하차비 등), 변동비용(서울 가락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등)
- (4) 연도별 평균 가격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
 - 도매시장 가격 활용 시,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등급별 경락가격을 산출 평균하거나 거래금액 합계를 거래물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 지역농협 등의 구매·매입·생산 가격 활용 시, 물량과 금액을 각각 합산하고, 금액의 합계를 물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 * 평균 매입가 : 원가 기준의 농협매입가 평균(정부수매가 제외)
- (5)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거래 물량 부족, 자료생산기관 오류 등으로 신뢰도 높은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예외적 기준 적용

II. 상품별 기준

1. 사과

- (1) 가격구분: 품종군과 숙기에 따라 구분
-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 (3) 기초통계 기간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간
후지계 외(조생종)	7월 11일 ~ 8월 31일
후지계 외(중생종)	8월 11일 ~ 9월 30일
후지계 외(만생종)	10월 1일 ~ 11월 10일
후지계(일반)	10월 21일 ~ 11월 30일
후지계(미야비)	10월 21일 ~ 11월 30일

- (4) 산출 방법: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2. 배

- (1) 가격구분: 품종에 따라 구분
-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 (3) 기초통계 기간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간
원황·화산	8월 1일 ~ 9월 20일
신화·창조	8월 21일 ~ 9월 20일
신고	8월 21일 ~ 11월 30일

- (4) 산출 방법: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단, 품종별 등급별 가격데이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락시장 원천데이터 활용
- * 단, 품종별 등급별 가격데이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락시장 원천데이터 활용

3. 단감

- (1) 가격구분: 품종에 따라 구분
-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 (3) 기초통계 기간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간
부유·대안	9월 1일 ~ 11월 30일
태추	9월 1일 ~ 11월 30일
송본·상서	9월 1일 ~ 11월 30일
서촌	9월 1일 ~ 11월 30일

- (4) 산출 방법: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4. 뽕은감

- (1) 가격구분: 품종에 따라 구분
-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 (3) 기초통계 기간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간
약시	10월 1일 ~ 11월 31일
대봉시	10월 21일 ~ 12월 31일

- (4) 산출 방법: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5. 뽕무

- (1) 가격구분: 구분 없이 운영
-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 (3) 기초통계 기간: 5월 1일 ~ 6월 30일
- (4) 산출 방법: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6. 봄배추

- (1) 가격구분: 구분 없이 운영
-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 (3) 기초통계 기간: 5월 1일 ~ 6월 30일
- (4) 산출 방법: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7. 단호박

- (1) 가격구분: 단호박, 미니단호박으로 구분
-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 (3) 기초통계 기간: 7월 1일 ~ 9월 30일
- (4) 산출 방법: 과거 5년 연도별 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8. 봄감자

- (1) 가격구분: 구분 없이 운영
-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 (3) 기초통계 기간: 6월 11일 ~ 7월 20일
- (4) 산출 방법: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9. 밥

- (1) 가격구분: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
- (2) 기초통계: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생산액
- (3) 기초통계 기간: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밥 조사기간 적용
- (4) 산출 방법: 과거 5년 연도별 생산가격의 올림픽 평균

10. 수박

- (1) 가격구분: 구분 없이 운영(일반 수박 단일)
-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 (3) 기초통계 기간: 6월 1일 ~ 8월 20일
- (4) 산출 방법: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11. 고구마

- (1) 가격구분: 호박고구마, 밤고구마로 구분
-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 (3) 기초통계 기간: 8월 1일 ~ 11월 10일
- (4) 산출 방법: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12. 옥수수

- (1) 가격구분: 강원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구분
-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 (3) 기초통계 기간: 6월 21일 ~ 8월 31일
- (4) 산출 방법: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13. 벼

- (1) 가격구분: 지역, 품종, 농법 등에 따라 구분
- (2) 기초통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매입가격*
 - * 농협 RPC 계약재배 매입가격 평균값에 민간 RPC 가격 지수 반영
 - * 1개 시군에 다수의 농협 RPC가 있는 경우, 전체 RPC 평균값 적용, RPC가 없는 지역은 해당 시·군 소재 혹은 인접한 광역지자체 등의 평균값 적용
- (3) 기초통계 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 (4) 산출 방법: 과거 5년 연도별 시·군별 농협 RPC 평균 매입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 결과 보고

☐ 수신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발신자 : ○○○○○○○○○

☐ 보고일시 : . . .

년 월 일 ○○지역 □□품목의 손해조사 결과를 (검토, 검증조사, 재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절한 손해평가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보험가입기관 (보험모집자)	손해평가기관	평가반원	조사일시	조사종류	재해종류	부당평가내용	비고

* 관련 자료 첨부(계약 내용, 손해평가 내용 등)

농작물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및 정산 처리기준

☐ (지원대상) 지자체 관내에 소재한 과수원 및 농지 주소 기준 지원

☐ (지원율) 지자체는 재정 여건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율을 결정하며, 시·도는 매년 1월 15일까지 시·군·구의 해당연도 지원율 및 예산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지원율 변경 시 기계약 건에 대한 지원율 소급이 불가함에 유의
- ※ 정부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 불가

☐ (지원절차) 가입자는 국고 및 지자체 예상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업자는 추후 지자체에 확정 지원보험료를 청구

☐ (지원금 청구) 보험사업자는 월별 교부청구서와 정산명세서를 익월 2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

- 정산명세서는 지자체 지원보험료, 기정산금액, 미정산금액을 구분 표기하며, 지원보험료에 대한 가입 세부 명세를 포함하여 게시
- 사업 도중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지자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지 않고 국고지원과 동일하게 정산금액으로 처리

☐ (지원금 정산) 지자체는 매분기 익월 말까지 보험사업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정산 실시(필요시 월별 정산 가능)

- 정산 편의를 위해 지원 예산의 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초과한 금액 선납 가능
- ※ 선납한 지원보험료에 대한 이자 미반영

☐ (예산) 예산은 지자체 지원보험료의 미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과거 보험가입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 최종 가입실적을 예측하여 반영

- 지자체는 가입 증가로 인해 지방비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예산확보를 통한 정산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험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
-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미수금 정산